

Korean Tax Update

August 2020, Issue 74

[조세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전문보기]

1. 코로나 19 피해극복 지원

(1)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58)

- 벤처기업집적시설 분양·임대 목적 부동산 감면 연장(①항) (3년)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종과배제 연장(②항) (3년)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축·증축 건축물 감면 연장(③항) (3년)

(2)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지특법 §58의 3)

-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조기안정과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연장 (3년)
- 감면이 인정되는 창업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으로 재정비*
* 일부 업종 추가

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1) R&D 차량 등 미등록대상 차량의 취득세율 명확화 (지방세법 §12①)

- 실험·연구용 차량 등* 미등록대상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2%)을 명확화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용 차량,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차량, 전기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용 차량 등

(2) 5G 이동통신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지특법 §49의 2)

-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5G 무선국 신규 구축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

3. 불합리한 과세제도 합리화

(1)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합리화 (지방세기본법 §88)

-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세예고 통지대상을 추가
 -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
 -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 정기분 외 과세예고 통지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에서 일괄 규정

* 납기전 징수사유, 수시부과사유, 신고 후 미납분 납세고지의 경우 등

(2)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지방세법 §103 의 19)

- (현행)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함에 따라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문제
- (개정)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시행시기)
 -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부칙 §9)>
 - 20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종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관한 특례(부칙 §11)>
 - ① 2014.1.1.부터 2021.1.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 「지방세기본법」 제 60 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 ② 경정청구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위 ①에 의하여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2021.6.30.까지 경정청구 가능

부칙 제 11 조(종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관한 특례)

- ①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구「법인세법」 제 57 조제 1 항제 1 호의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 57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된 경우 동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방세기본법」 제 60 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 ②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 50 조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제 1 항에 의하여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2021년 6월 30일까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법인의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부담 합리화 (지방세기본법 §44)

- 법인 분할 시 연대납세의무 한도 신설
 -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 연대납세의무 적용 시점 명확화
 - (현행)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 (개정) 분할등기일

(2)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가산세·가산금 일원화등 (지방세기본법 §34·§39·§55 등)

- 지방세 납부지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일원화를 위해, 납부지연 제재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 현행 산정방식(일할+월할)은 유지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지방세 산정기준 보완

- 지방세에서 가산세는 제외

(3)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 (지방세기본법 §85)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조사를 마친 후 빠른 시일 내(현행)에서 조사를 마친 후 20 일 이내(개정)로 명확화
 - * 소재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0 일 이내 통지
- 다음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자 동의시, 해당부분을 제외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부분 결과 통지)를 허용
 - 국외자료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 진행
 - 세법해석·사실관계확정 위해 행안부장관과 질의절차 진행
- 위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날로부터 20 일 이내 통지한 부분 이외의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 신설
 - * 소재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0 일 이내 통지

(4)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지방세법 §74~§76, §78~§84, §150~§152)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
- 주민세 납기를 8 월로 통일*
 - * (현행) 균등분: 8 월, 재산분: 7 월 → (개정) 개인분, 사업소분: 8 월
- 지방교육세 세수증립을 위해, 균등분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현행)하던 지방교육세를 사업소분에도 부과*
 - * (현행) 균등분 세액의 10% (인구 50 만 이상 시는 25%) → (개정) 개인분 및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10% (인구 50 만 이상 시는 25%)

현 행			개 정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內	개인분(8월)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사업소분 (8월)	사업자
	법인	5 ~ 50만원	◦ 연면적330㎡초과 기본세액+250원/㎡		
재산분 (7월)	사업자	연면적 330㎡초과 250원/㎡	종업원분	<좌 동>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 다만,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 만원 차등(기존 법인균등분 단순화)

5. 현행 제도의 보완

(1)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 (지방세기본법 §35 의 2)

- (수정신고의 효력)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불변

(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 (지방세기본법 §96)

-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합동회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결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
 - *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지방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규정 합리화 (지방세징수법 §25, §25 의 2, §25 의 3, §26①, §26②, §27, §28, §29)

- 징수유예 시기에 구분없이 '징수유예등'(현행)으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징수유예 종류를 징수유예 시기에 따라 '납기시작 전'과 '고지된 후'로 구분하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징수유예 요건을 법률로 규정
- 징수유예 신청 시 승인여부 통지절차 신설
 - ※ 미통지 시 신청일로부터 10 일이 되는 날 징수유예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
- 징수유예 의무불이행* 납세자에 대한 재징수유예 금지
 - * 징수유예 기한까지 미납, 지자체 장의 담보제공(변경) 요구 불응 등

6. 국세 개정안 반영

(1)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지방세법 §92①)

과세표준 구간	현행	개정안
1,200 만 원 이하	0.6%	(좌 동)
1,200 ~ 4,600 만 원	1.5%	
4,600 ~ 8,800 만 원	2.4%	
8,800 만 원 ~ 1 억 5 천만 원	3.5%	
1.5 ~ 3 억 원	3.8%	
3 ~ 5 억 원	4.0%	
5 ~ 10 억 원	4.2%	
10 억 원 초과		4.5%

(2) 지방소득세 신탁세제 개선 (지방세법 §86 등)

-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탁소득의 수익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신탁 등에 대해서는 수탁자 과세를 적용
- 수탁자에 대한 법인과세 도입에 따른 납세지 등 기본규정을 보완

(3)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지방세법 §93 등)

-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던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과세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전문보기]

정부는 지난 7.22.(수)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법인세법 등 16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8.25.(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함. 16개 법률안들은 9.3.(목)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판례]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국패)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 다 300361 판결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갑 주식회사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회사의 계좌에서 위 금액이 출금된 시점인 2008년경에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주식회사의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출액 중 매출계정이 아닌 외화물품예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매출누락액은 각각의 매출누락시에 갑 주식회사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매출누락액은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인 2004년 내지 2007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일이전인 2013.6.1.에 이미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시점에 관한 법리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행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선행 확정판결의 대상인 종전 부과처분과 과세대상과 세목을 달리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패)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 두 30757 판결

- 과세관청이 ○○무역의 100% 주주인 원고가 소외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거래를 ○○무역과 소외인 사이의 부동산양도거래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그 소송에서 패소하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해당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그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94다3667, 대법원 2004두11459 등), 선행 확정판결의 대상인 종전 부과처분은 법인인 ○○무역과 소외인 사이의 부동산양도거래에 따른 '법인세'인 반면, 이 사건 처분은 개인인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주식양도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선행확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이 아닌 종전 부과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결정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례]

신축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 면세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사업장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쟁점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 43 조의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조심 2019 중 4594, 2020. 7. 8.

- 사업장별 과세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7중3020)으로 별다른 조세회피목적 없이 신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신축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대운영할 계획이었다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이전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장 명의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면세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이후 쟁점사업장을 임대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과세(임대업)사업자로서 쟁점축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더라도 국가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매입세액 불공제시 청구인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존 면세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사업장 관련 매입세액 중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쟁점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추징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한 후, 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면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19 서 3541, 2020. 7. 13.

-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두5514)에서,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점, 청구법인은 「관세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쟁점추징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기 환급한 법인세와 같이 원천세도 환급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에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지배주주 A 에게 공동으로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판결하였고, 그 중 1인이 추징금을 납부함으로써 공동연대납부의무자의 위법소득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지배주주 A 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지배주주 A 소유의 주식에 대한 압류 및 처분금지 결정을 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적극적인 채권행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배주주 A 와 공동연대납부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처분한 경우와 관련하여 그 처분시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조사)

조심 2019 인 1925, 2020. 7. 1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병원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해 병원회계로 당해 토지를 전입하는 때에 비로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점, 국세청도 기존에 유권해석을 통해 병원건물 신축(증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단순히 토지의 취득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지출)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는 이상, 청구법인의 2018.3.28.자 법인세 수정신고와 동일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5년내 미사용 잔액을 환입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 29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환입방법에 부합하는 점, 2018.2.13.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서 “의료법인이 유형자산 취득 후 보건업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 취득비용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단서규정이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실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별로 5년내 미사용 잔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를 처분한 2017사업연도에 의료발전준비금 환입으로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타법인에게 지급하게 한 경우, 쟁점배당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경정)

조심 2019 중 3368, 2020. 7. 16.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이사회에서 당초 안건으로 상정한 중간배당액 전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면서, 다만 청구법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000 이 수령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에게 쟁점중간배당에 따른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000 에게 지급하게 한 것은 자신이 배당금을 수령한 후 그 금액을 000 에게 직접 지급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해 보이고, 이 경우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 000 에 대한 지출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인바, 이 건도 그와 동일하게 세부담을 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인세 재경정처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순손익액을 다시 계산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구 2773, 2020. 7. 16.

-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8구3476)에 대하여 심판원은 세무서장의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사유로 취소결정한 것일 뿐,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 쟁점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 점,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3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가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08두4275)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채권의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 2019 서 0541, 2020. 7. 16.

- PFV 는 청구법인 등의 건설적투자자와 쟁점 PF 대출금의 대주들인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실질적으로 쟁점 PF 사업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건설출자자들이 PFV 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자신들의 PFV 출자지분에 따라 그 부족자금을 PFV 에 후순위 대여금의 형태로 지원하기로 건설출자자 협약(자금보충의무)을 체결한 점,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PFV 의 지속적인 자본잠식 상태를 고려하면 PFV 가 쟁점채권은 물론 이자를 부담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건설적투자자들도 자금보충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한 채권 관련 이자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에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자금보충의무 이행시 무이자로 하는 상관행이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서 PFV 의 설립 경위나 청구법인의 자금보충의무 약정 및 이행 경위, 자금보충의무 이행 당시 PFV 의 영업상황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 관련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예규]

건축물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판단시,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건축 공사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세제과-1212, 2020. 6. 1.

- 건축중이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기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감사원 심사 2007-83)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법원은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 두 22973)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설계변경 행위를 건축공사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건축물의 범위에서 '정당한 사유'란 사업주체 내부사정이 아닌 사업주체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이나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지방세운영과-2636)이고, 법원도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란 공사를 중단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상

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5 두 39248)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면적과 건물의 용도별 면적 등을 변경하기 위한 설계변경은 사업주체 외부의 불가피한 사유라기보다는 사업주체 내부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건축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음.

종업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61, 2020. 6. 18.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4 조(이하 "해당규정"이라 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나, 해당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8 조의 3 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국조령 제 15 조의 2 에 따른 이전소득 반환 시 반환 범위에 채무상계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 2020. 6. 30.

- 과세당국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가격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반환받을 금액)하고 같은 법 제 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 통지를 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임시유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익금에 산입된 금액(반환받을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그 상계금액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연결납세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6, 2020. 7. 17.

- 「법인세법」 제 76 조의 8 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 76 조의 22 에 따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코로나 19 로 인한 경영악화가 산업단지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722, 2020. 7. 21.

- 코로나 19 라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 등 경영 악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 취득 후 상당한 시간(2 년 정도)이 지나서 발생한 점, 당해 과세관청 공무원의 출장복명서(2020.6.16.)에 따르면 토지 취득 후 2년 6월이 지나서도 건축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는 현황에 비추어 보면 해당 토지를 목적사업(산업용건축물 건축)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도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경영 악화는 내부적인 사정일 뿐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대법원 2012 두 1462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코로나 19 로 인한 기업의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의 사유로는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株式이 자기株式으로 소각되는 경우, 해당株式에 대하여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297, 2020. 7. 24.

-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출자법인株式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적격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에게 해당 피출자법인株式 및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한 경우로서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피출자법인을 흡수합병 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출자법인株式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 시 승계받은 피출자법인株式에 대하여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co@kr.kpmg.com